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840

발의연월일: 2025. 9. 9.

발 의 자: 추경호·조정훈·김장겸

김기현 · 김정재 · 박충권

배준영 • 임종득 • 권성동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음.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 그러나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임.

또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재정,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

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 70년이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입자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 하한을 두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제20조,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90"을 "1천2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 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재정 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결과 재정 계산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70 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다음 각 호 의 비율을 뺀 값(다만, 해당 값이 1만분의 31 미만일 때에는 1만분 의 31로 본다)을 기준으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비율가. 연금수급 4년 전 연도와 대비한 3년 전 연도의 가입자 감소율나. 연금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2년 전 연도의 가입자 감소율

- 다.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가입자 감소율
- 2.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비율
 - 가. 연급수급 4년 전 연도와 대비한 3년 전 연도의 평균수명 증가 율
 - 나. 연급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2년 전 연도의 평균수명 증가율
 - 다. 연급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평균수명 증가율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의 구체적 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 제목 중 "적용례"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5년까지"를 "2027년까지"로 한다.

-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4조(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1966년생부터 1975

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50
- 2. 2027년은 1천분의 55
- 3. 2028년은 1천분의 60
- ② 1976년생부터 1985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2. 2027년은 1만분의 500
- 3. 2028년은 1만분의 525
- 4. 2029년은 1만분의 550
- 5. 2030년은 1만분의 575
- 6. 2031년은 1만분의 600
- 7. 2032년은 1만분의 625
- ③ 1986년생부터 1995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6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

- 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0만분의 4,665
- 2. 2027년은 10만분의 4,830
- 3. 2028년은 10만분의 4,995
- 4. 2029년은 10만분의 5,160
- 5. 2030년은 10만분의 5,325
- 6. 2031년은 10만분의 5,490
- 7. 2032년은 10만분의 5,655
- 8. 2033년은 10만분의 5,820
- 9. 2034년은 10만분의 5,985
- 10. 2035년은 10만분의 6,150
- 11. 2036년은 10만분의 6,315
- ④ 1996년생부터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40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0만분의 4,625
- 2. 2027년은 10만분의 4,750
- 3. 2028년은 10만분의 4,875
- 4. 2029년은 10만분의 5,000
- 5. 2030년은 10만분의 5,125

- 6. 2031년은 10만분의 5,250
- 7. 2032년은 10만분의 5,375
- 8. 2033년은 10만분의 5,500
- 9. 2034년은 10만분의 5,625
- 10. 2035년은 10만분의 5,750
- 11. 2036년은 10만분의 5,875
- 12. 2037년은 10만분의 6,000
- 13. 2038년은 10만분의 6,125
- 14. 2039년은 10만분의 6,250
- 15. 2040년은 10만분의 6,375
- 제4조의2(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특례) ① 1966년생부터 1975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100
 - 2. 2027년은 1천분의 110
 - 3. 2028년은 1천분의 120
 - ② 1976년생부터 1985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95
- 2. 2027년은 1천분의 100
- 3. 2028년은 1천분의 105
- 4. 2029년은 1천분의 110
- 5. 2030년은 1천분의 115
- 6. 2031년은 1천분의 120
- 7. 2032년은 1천분의 125
- ③ 1986년생부터 1995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6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933
- 2. 2027년은 1만분의 966
- 3. 2028년은 1만분의 999
- 4. 2029년은 1만분의 1,032
- 5. 2030년은 1만분의 1,065
- 6. 2031년은 1만분의 1,098
- 7. 2032년은 1만분의 1,131
- 8. 2033년은 1만분의 1,164
- 9. 2034년은 1만분의 1,197

- 10. 2035년은 1만분의 1,230
- 11. 2036년은 1만분의 1,263
- ④ 1996년생부터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40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925
- 2. 2027년은 1만분의 950
- 3. 2028년은 1만분의 975
- 4. 2029년은 1만분의 1,000
- 5. 2030년은 1만분의 1,025
- 6. 2031년은 1만분의 1,050
- 7. 2032년은 1만분의 1,075
- 8. 2033년은 1만분의 1,100
- 9. 2034년은 1만분의 1,125
- 10. 2035년은 1만분의 1,150
- 11. 2036년은 1만분의 1,175
- 12. 2037년은 1만분의 1,200
- 13. 2038년은 1만분의 1,225
- 14. 2039년은 1만분의 1,250
- 15. 2040년은 1만분의 1,275

제4조의3(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100
- 2. 2027년은 1천분의 110
- 3. 2028년은 1천분의 1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른 재정 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천200-----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 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 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에 따른 재정 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결과 재정 계산을 수행한 시점 으로부터 70년 이내에 국민연 금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연금수급 2년 전 연

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 비자물가변동률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뺀 값(다만, 해당 값이 1만분의 31 미만일 때에 는 1만분의 31로 본다)을 기준 으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더하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비율
 - 가. 연금수급 4년 전 연도와대비한 3년 전 연도의 가입자 감소율
 - 나. 연금수급 3년 전 연도와대비한 2년 전 연도의 가입자 감소율
 - 다.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대비한 전년도의 가입자감소율
- 2.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비율
 - <u>가. 연급수급 4년 전 연도와</u> <u>대비한 3년 전 연도의 평</u>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u>적용례</u>) 2008년부터 <u>2025년</u>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u>변 0 0/ 현</u>
나. 연급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2년 전 연도의 평
<u></u> 균수명 증가율
다. 연급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평균수명
증가율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u>특례</u>) <u>2027년</u>

규스며 즈가유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8. (생략)

<신 설>

<신 설>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 (생 략)

③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연 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 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 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 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

1. ~ 18. (현행과 같	<u> </u>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u>C</u>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	<u>5</u>
세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	·한
경과조치) ①·② (현행과	같
<u>o</u>)		
③2027년까	<u>}ス]</u>	
	<u>.</u>	

개정법률 부칙

제4조(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 료에 관한 특례) ① 1966년생 부터 1975년생까지의 사업장가 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 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소득월 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2. 2027년은 1만분의 500
- 3. 2028년은 1만분의 525
- 4. 2029년은 1만분의 550
- 5. 2030년은 1만분의 575
- 6. 2031년은 1만분의 600
- 7. 2032년은 1만분의 625
-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 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다음 각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95
- 2. 2027년은 1천분의 100
- 3. 2028년은 1천분의 105
- 4. 2029년은 1천분의 110
- 5. 2030년은 1천분의 115
- 6. 2031년은 1천분의 120
-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50
- 2. 2027년은 1천분의 55
- 3. 2028년은 1천분의 60

- ② 1976년생부터 1985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2. 2027년은 1만분의 500
 - 3. 2028년은 1만분의 525
 - 4. 2029년은 1만분의 550
 - 5. 2030년은 1만분의 575
 - 6. 2031년은 1만분의 600
 - 7. 2032년은 1만분의 625
 - ③ 1986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 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 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6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0만분의 4,665
- 2. 2027년은 10만분의 4,830
- 3. 2028년은 10만분의 4,995
- 4. 2029년은 10만분의 5,160
- 5. 2030년은 10만분의 5,325
- 6. 2031년은 10만분의 5,490
- 7. 2032년은 10만분의 5,655
- 8. 2033년은 10만분의 5,820
- 9. 2034년은 10만분의 5,985
- 10. 2035년은 10만분의 6,150
- 11. 2036년은 10만분의 6,315
- 11. 2000년 10년년 이 0,515 ④ 1996년생부터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40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2026년은 10만분의 4,625 2. 2027년은 10만분의 4,750 3. 2028년은 10만분의 4,875 4. 2029년은 10만분의 5,000 5. 2030년은 10만분의 5,125 6. 2031년은 10만분의 5,250 7. 2032년은 10만분의 5,375 8. 2033년은 10만분의 5,500 9. 2034년은 10만분의 5.625 10. 2035년은 10만분의 5,750 11. 2036년은 10만분의 5,875 12. 2037년은 10만분의 6,000 13. 2038년은 10만분의 6,125 14. 2039년은 10만분의 6,250 15. 2040년은 10만분의 6,375 제4조의2(지역가입자 및 임의가 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특 례) ① 1966년생부터 1975년생 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 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 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100

- 2. 2027년은 1천분의 110
- 3. 2028년은 1천분의 120
- ② 1976년생부터 1985년생까지
- 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 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
-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 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
- 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95
- 2. 2027년은 1천분의 100
- 3. 2028년은 1천분의 105
- 4. 2029년은 1천분의 110
- 5. 2030년은 1천분의 115
- 6. 2031년은 1천분의 120
- 7. 2032년은 1천분의 125
- ③ 1986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 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 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
-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 고 2026년부터 2036년까지는
-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
- 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933

- 2. 2027년은 1만분의 966
- 3. 2028년은 1만분의 999
- 4. 2029년은 1만분의 1,032
- 5. 2030년은 1만분의 1,065
- 6. 2031년은 1만분의 1,098
- 7. 2032년은 1만분의 1,131
- 8. 2033년은 1만분의 1,164
- 9. 2034년은 1만분의 1,197
- 10. 2035년은 1만분의 1,230
- 11. 2036년은 1만분의 1,263
- ④ 1996년생부터의 지역가입자
-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
- 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4
- 0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
- 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925
- 2. 2027년은 1만분의 950
- 3. 2028년은 1만분의 975
- 4. 2029년은 1만분의 1,000
- 5. 2030년은 1만분의 1,025
- 6. 2031년은 1만분의 1,050
- 7. 2032년은 1만분의 1,075
- 8. 2033년은 1만분의 1,100
- 9. 2034년은 1만분의 1,125

<신 설>

10. 2035년은 1만분의 1,150
11. 2036년은 1만분의 1,175
12. 2037년은 1만분의 1,200
13. 2038년은 1만분의 1,225
14. 2039년은 1만분의 1,250
15. 2040년은 1만분의 1,275
제4조의3(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보험료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
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100
- 2. 2027년은 1천분의 110
- 3. 2028년은 1천분의 120